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앙전공사상심사 처리기간 신설〉

■ 조 국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88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 국회의원 등 19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13.
3. 회부연월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 등의 사망·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재심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에 관하여 재심사 기한 등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24년 7월 기준으로 동위원회의 재심사·의결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등 보상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9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그 유족

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등이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제6항 및 제7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중앙전공사상심사와 관련된 처리 기간을 법으로 명시해
군 복무 중 사망·상이자와 유가족 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제6항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 ⑤ (생략) <u><신설></u>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재심사·의결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u>⑦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전사자등 및 그 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신설></u>	

현행	개정안
⑥ (생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 현행법은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¹⁾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²⁾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국방부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고 있음.

□ 한편,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 하도록 규정³⁾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1) 「군인사법」 제54조의3(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2)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에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

재심사·의결과 관련된 처리 기간 및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연간 처리건수는 210여건, 연간 재심사 신규 접수 건수는 18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월 2~3회 심사를 실시하고 1회 심사 시 약 8건을 심사하여 통상적으로 재심사·의결 완료까지 약 8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현황]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심사 건수	사망	208건	267건	332건	194건	173건	84건
	상이	43건	29건	39건	23건	23건	41건
평균처리 기간(개월)		12	9	9	10	6	10

* 연간 처리건수 : 243여 건

자료: 국방부

- 개정안은 ① 재심사 청구 또는 국가기관의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결을 완료하도록 하고, ② 재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③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전사자등⁵⁾ 또는 그 유족에게 통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건수가 증가(폭증) 및 심사 대기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이유는 2018.9.14.~2023.9.13. 존속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사 권고 건(1,038건 2,692명)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처리 기간을 법으로 명시하여 관련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군 복무 중 전사자등과 그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한편, 개정안의 개정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간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건당 평균 소요 심사기간, 현재 누적 심사 건수 및 심사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와 관련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심사기간 연장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에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5)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재심사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전사자등 또는 그 유족에게 통보를 의무화 하는 것은 심사 대상자 및 그 유족의 심사 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2024년 10월 기준 재심사 대기 건수가 338여건에 달한다는 점과 현재 처리절차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재심사 청구 또는 국가기관의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일률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심사·의결을 완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재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현저하게 부족하며, 현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의결을 정상적으로 준비·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부서⁶⁾를 정식직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바, 지원부서 신설을 통하여 현재 처리하고 있는 수준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6)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25년 한시조직 → 정식직제 반영 예정('23년 10명 → '24년 5명 → '25년 4명)

구 분	2017년~2018년	2019년	2020년~2023년	2024년
소 속	차관		인사복지실	
구성원	30명	11명(+과건 3명)	10명(+과건 3명)	5명(+과건 3명)
임 무	영현관리, 재조사, 법무심사 업무	영현관리, 심사업무 (‘19. 1월부 재조사는 조사본부로 법무심사는 각 군으로 해체)		
주 기	월 1~3회 심사 (1회 심사 시 3~34건 심사)	월 2회 심사 (1회 심사 시 4~7건 심사)	월 2~4회 심사 (1회 심사 시 4~15건 심사)	월 2~3회 심사 (1회 심사 시 5~11건 심사)

고려하여 ‘120일’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임.

나아가서, 과거 조사(수사)결과의 미흡이나 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세부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심사 청구 후 유가족의 요청에 의해 심사가 보류된 경우 등과 같은 일정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부터 처리기한을 기산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현행	개정안	국방부 수정의견
<신설>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⑥ <u>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재심사·의결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⑥ <u>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재심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재심사·의결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신설>	⑦ <u>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u>	⑦ (개정안과 동일)

	<u>전까지 전사자등 및 그 유족</u> <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	---	--

문 의 처
02)6788-5310